

인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

1.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‘인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’에 대하여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-50호, 2016.03.28) 및 환지계획 인가(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-3766호, 2017.03.10.) 되었기에 「도시개발법」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.
2.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은 우리 조합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이 공고에 대한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, 주소 불명 및 부재·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-- 다 음 --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-3번지 일원
- 면 적 : 524,510.0㎡
- 사업시행방식 : 환지방식
- 사업시행자 :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-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(2014.07.07) ~ 환지처분일(2019.12.30.)

나. 환지예정지 지정 내용

- 대상 :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
- 면 적 : 524,510.0㎡
- 토지이용계획(환지예정지 지정) :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(2016.03.28.) 내용에 따름.

다. 환지예정지 지정일 및 효력발생일

- 환지예정지 지정일 : 2017년 4월 12일
- 효력 발생일 : 환지예정지 지정된 일반 토지 : 2017.04.12.
금전청산 대상 토지 : 2017.05.12.
지장물이 있는 토지 : 지장물 철거 다음 날
-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기간 :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~ 환지처분
공고일 까지

라. 환지에정지 지정 효력

- 환지에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「도시개발법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에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에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.
- 또한, 환지에정지의 사용·수익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 합니다. 다만, 「도시개발법」 제36조에 따라 환지에정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 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부지 정지공사 미완료, 기타 특 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지에정지의 사용·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유가 종결된 후에 사용·수익이 가능 하며, 이 경우에도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·수익 의 정지는 환지에정지 효력 발생일 부터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마. 환지에정지의 사용

- 환지에정지 지정된 토지(금전청산 대상 토지 제외)는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합 정관 제45조에 의거 우리 조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
- 조합에서는 기반시설 공사 및 건축물 사용, 사업 진행에 따른 지장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나,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과도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납부한 후 사용이 가능 합니다.

바. 부족면적 발생 토지 및 금전청산 대상 토지의 청산 시기

- 환지 청산 면적 : 붙임 환지에정지 지정 조서 참조
- 청산 시기 : 도시개발법 제40조의 환지처분 공고 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청산금 지급

사. 환지에정지 증명 발급

- 환지에정지 지정 내용의 확인을 위한 '환지에정지 증명원' 은 조합에서 발급
- 토지의 사용이나 매매 시 환지에정지 증명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.(끝)

2017. 04. 12.

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

